

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

1/3

심의일자	2019.11.12(화)		
사업명/신청위치	신반포19차 주택재건축정비사업 / 서초구 잠원동 61-2번지 일대		
의결번호	2019-18-2	심의결과	조건부의결
[심의 내용] 경관 + 건축 심의			
<p>■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,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/p> <p>■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「경관법」 제28조 및 「건축법」 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.</p>			
< 건축 분야 >			
<input type="checkbox"/> 건축계획	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부대복리시설은 아래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하기 바람.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경로당은 폐쇄적인 창호보다는 개방적인 창호를 설치하고, 차폐를 위한 식재 계획 바람.- 작은 도서관은 독서실의 기능보다는 공공에 개방되는 도서관으로 사용되도록 계획 바람.- 어린이집은 최대한 일조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고 친환경적인 재료를 선택하여 입면 계획 바람.○ 주민공동시설의 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 및 발코니 삭제기준 완화 신청에 대하여 완화 인정함.			
<input type="checkbox"/> 구조	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구조심의시 기초형식 및 부력대응 공법을 확정하여 관련 설계도서 및 계산서 제출 바람.			
<input type="checkbox"/> 방재	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지하1~3층 주차장 화재시 연기배출방안 검토·적용 바람.○ 하향식 피난 사다리를 피난기구로 적용할 경우, 소방 법규에 맞도록 설치하고 실외기 등 다른 설비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계획 바람.			
- 계속 -			

2019.11.12.
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

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

2/3

심의일자	2019.11.12(화)		
사업명/신청위치	신반포19차 주택재건축정비사업 / 서초구 잠원동 61-2번지 일대		
의결번호	2019-18-2	심의결과	조건부의결
[심의 내용] 경관 + 건축 심의			
〈 건축 분야 〉(계속)			
□ 조경			
○ 단지경계부 차폐식재로 계획된 사철나무외에 화목류를 추가하여 후면에 식재하기 바라며, 인조화강석 블록은 친환경적인 재료로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설치 바람.			
〈 공통사항 〉			
1.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시 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 받으시기 바람.			
가. 녹색건축인증 : 우수(그린2)등급,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1등급 적용			
나. 신재생에너지설비 공급율 : 5.58%이상 적용 (태양광(PV) 123.67kW, 연료전지 10kW)			
2.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, 급·배기구, 안테나 등 건축설비는 고층조망(SKY VIEW)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 등을 설치하여 디자인 마감하시기 바람.			
3. 「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」 2.적용기준 나.환경관리부문 기준을 참고하여 건축물 내 미세먼지(초미세먼지 포함) 저감을 위한 계획 수립 바람.			
4. 수돗물 재처리시설(중앙정수처리장치) 설치·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, CO ₂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“불필요한 시설”이므로 설치제한을 권장함.			
- 계속 -			

2019.11.12.
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

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

3/3

심의일자	2019.11.12(화)		
사업명/신청위치	신반포19차 주택재건축정비사업 / 서초구 잠원동 61-2번지 일대		
의결번호	2019-18-2	심의결과	조건부의결
[심의 내용] 경관 + 건축 심의			
〈 공통사항 〉(계속)			
5. 다음 대상의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을 설치 권고(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).			
1) 대지면적 1,000㎡이상이거나 건축 연면적 1,500㎡이상의 건축물.			
2)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'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'을 참고하여 적용.			
6. 『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』 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·시공하기 바람. 끝.			

2019.11.12.
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